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99호 2022. 6. 1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76호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실시계획인가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2-77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4
- 정선군 고시 제2022-78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674호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공람 ·
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2-720호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76호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6-25호(2016. 4. 15.)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19-45호(2019. 3. 15.)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403-2 ~ 신동읍 고성리 686-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사업
 -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하천(고성천):소하천] 정비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	금회시행	
하천 (고성천)	소하천	6.38km	0.35km (양안 : 0.70km)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건설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2023.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계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신동읍 고성리	366	전	545	55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41,102동 1201호	방*희	-	-	-
2	신동읍 고성리	303-1	도	1,190	25	-	국 (국토교통부)	-	-	-
3	신동읍 고성리	1048-18	구	83,603	338	-	국 (농림축산식품부)	-	-	-
4	신동읍 고성리	367	대	337	1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247-2	최*은	-	-	-
5	신동읍 고성리	368-1	도	183	79	-	국 (국토교통부)	-	-	-
6	신동읍 고성리	368	전	3,266	813	사북읍 사북리 304-4 사북광원입대 아파트 나-505	최*두	-	-	-
7	신동읍 고성리	692-3	도	326	27	-	국 (국토교통부)	-	-	-
8	신동읍 고성리	372	전	1,160	158	신동읍 고성리 367	정*의	-	-	-
9	신동읍 고성리	373	구	456	247	-	국 (기획재정부)	-	-	-
10	신동읍 고성리	389	대	314	21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창말길 10	정*미	-	-	-
11	신동읍 고성리	388-1	전	991	388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108 203동 904호	정*진	-	-	-
12	신동읍 고성리	387-1	전	1,263	763	서울 광진구 중곡동 62-56	김*미	-	-	-
13	신동읍 고성리	387-4	도	63	52	-	정선군	-	-	-
14	신동읍 고성리	387-2	도	456	46	-	국 (국토교통부)	-	-	-
15	신동읍 고성리	383	구	575	86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3동 503호	김*순	-	-	-
16	신동읍 고성리	1048-17	도	662	269	-	국 (국토교통부)	-	-	-
17	신동읍 고성리	384	구	274	127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3동 503호	김*순	-	-	-
18	신동읍 고성리	385	구	261	146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79번길 12-9 3동 503호	김*순	-	-	-
계				95,925	3,641					

정선군 고시 제2022-77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85-134호(1985. 12. 14.)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 고시 제2020-240호(2020. 10. 8.)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개설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3호)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도로	소로1-23호	L=340m B=4~10m	L=176.16m B=10m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봉양리	54-7	대	12,355	688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55-31	전	106	14		정선군			
3	정선읍 봉양리	57-1	도	4,054	21		정선군			
4	정선읍 봉양리	54-56	대	1,124	1,124		정선군			
5	정선읍 봉양리	78-24	전	13	13	정선읍 봉양리 78-11	이희열			
6	정선읍 봉양리	78-25	전	3	3	정선읍 봉양리 78-11	이희열			
7	정선읍 봉양리	78-22	전	1	1	남면 문곡리 317-7	학교법인 문곡학원			
8	정선읍 봉양리	54-58	대	1	1		국(기획재정부)			
9	정선읍 봉양리	78-11	전	4	4	정선읍 녹송로 36	이희열		정선농협 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
10	정선읍 봉양리	78-19	도	32	32	정선읍 봉양리 78-11	이희열			
11	정선읍 봉양리	78-21	도	6	6		정선군			
계				17,699	1,907					

정선군 고시 제2022-78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0-240호(2020. 10. 8.)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개설
 -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1-24호)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금회시행	
도로	소로1-24호	L=70m B=10m	L=70m B=10m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2022.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 의권리의종 류및내용
1	정선읍 애산리	432-426	대	7,254	124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54-7	대	12,355	592		정선군			
계				19,609	716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674호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실시계획 인가 공람 · 공고

1. 강원도 고시 제2005-174호(2005. 7. 22)로 최초 결정 및 정선군고시 제2015-72호(2015. 9. 22)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 ·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읍 봉양리 7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사업
- 2)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공원	어린이공원	1,526㎡	■어린이공원 조성 A=1,526㎡ - 기 반 시 설 : 660㎡ - 휴 양 시 설 : 30㎡ - 유 희 시 설 : 74㎡ - 녹지 및 기타 : 762㎡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12.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2. 6. 3. ~ 2022. 6. 17.)

사. 공람장소 : 도시과(☎033-560-2475)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공부	편입	주 소	성명	관 계 인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정선읍 봉양리	34-68	대	62	11		정선군			
2	정선읍 봉양리	91-28	대	42	27		정선군			
3	정선읍 봉양리	72-3	대	549	533		정선군			
4	정선읍 봉양리	72-4	도	6,564	3		정선군			
5	정선읍 봉양리	73-2	장	964	952		정선군			
계				8,181	1,526					

정선군 공고 제2022-720호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5조)

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hnahn1663@korea.kr

2) 우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3) 팩스 : 033-560-2099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www.elis.go.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 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사용계획 및 점용료·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군수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④ 군수는 점용료·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사용료를 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

⑧ 군수는 점용료·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사용허

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① 군수는 점용료·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감면한다.
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7조(점용료·사용료의 조정) 군수는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성명 (개인·단체·법인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